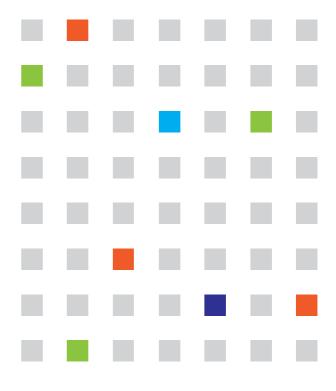


2022년 10월 AML REPORT

- 1. 자금세탁방지(AML) 동향
- 2. (금융기관 등) AML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본 자료는 당행 자금세탁방지부에서 임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외부 유출을 금합니다.

(1) '김치 프리미엄'노린 9천억대 환치기_은행직원도 개입

- □ 국내 시세보다 외국 시세가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일본· 중국의 세력과 연계된 일당이 조직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에 대량의 가상 자산을 투매하고 그 이익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범행 구조 를 최초로 적발한 사건으로,
- □ 이들은 <mark>일본과 중국에서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mark> □ 대금을 일본과 중국, 홍콩 등으로 각각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협의로 전직 우리은행 지점장 A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관세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23개 업체 명단을 이첩 받은 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검찰은 이들 조직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우리은행 전 지점 장 A씨에 대해 "은행의 자동 의심거래 보고를 본점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뒤 업체에 이를 피할 방법을 알려줬고, 계좌 추적 영장 집행 사실도 유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A씨는 2천400 만원의 현금과 상품권 100만원을 받았으며, 해당 지점도 외화 거래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 모두 21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 □ 시중은행 은행원이 1년여간 수천억원의 외화를 불법송금하고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은행의 주의·감독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시중은행 전체적으로 외화 송금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시사Point : 최근 해외송금 관련 검찰 및 감독당국 등의 관심이 집중되므로, 외환송금 업무 시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 이행 필요!!

(2) 美OFAC, 카드사에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11만 달러 벌금 부과

-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30일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 카드'가 미국의 제재(Sanctions) 법규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11만 6천48달러 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힘
- □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탱고 카드'는 (거래 대상의)위치(소재지)를 확인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아 쿠바와 이란, 시리아, 북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최소2만 7천 여개의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전송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법, 대쿠바 자산통제법, 이란제재(TSR)법, 대통령행정명령 13685호 등에 대한 위반이라고 설명하였음
- □ <mark>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등 제공을 전면</mark>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혐의 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시사Point :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등에 위치하고 있는 자(법인 포함)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필요

(3) 고팍스·코인원 FIU 종합감사 결과 '주의' 처분_과태료 수억원대

- □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통해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체계 구축이나 운영, 서류 보완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지적사항 20여개를 추출한 뒤 개별 회사의 소명을 듣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짐
- □ 또 특금법상 주어진 AML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나 고객확인(KYC)에 미흡함이 발견된 사례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수천만원, 코인원 등은 수억원대 과태료가 책정된 것으로 전해짐
- ⇒ 시사Point :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 절차 이행 미흡은 과태료 부과 대상!!

02 (금융기관 등) AML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1) 시례 1 : <mark>개인고객 정보확인 부적정</mark>

- ♪ 가상자산사업자 A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되어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올바르게 할 수 없음
- □ (근거규정) 금융회사 등은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금법§5의2)
 - 특히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객**(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유의사항) 고객 신원정보가 시스템에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고객에게 보완 요청을 해야 합니다.
 - 단순히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고객 정보 확인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가능한 직접 확인하고, 해당 고객의 거래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 (위반시) 고객 신원정보를 미확인하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20)

(금융기관 등) AML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2) 사례 2: <mark>법인고객 실제소유자 확인 부적정</mark>

- ◈ 가상자산사업자 B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 최대 주주(60% 지분)인 甲이 아닌, 2대 주주(40% 지분)인 대표자 乙을 실제 소유자로 잘못 정하여, 실제 소유자인 甲이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 □ (근거규정) 금융회사 등은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금법§5의2, 영 §10의5)
 - * (1단계) 25% 이상 지분소유자** → (2단계) 최대 주주** → (3단계) 대표자
 - ** 복수의 자연인이 있을 경우 최대주주로 하되 필요시 전부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
 - o 아울러. 실제 소유자가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43)
 - * ①금융거래제한대상자, ②UN 지정 제재대상자, ③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자, ④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등
- □ (유의사항) 법령에서 정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 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와 요주의 인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o 만약. 실제 소유자 확인 과정에서 **복수의 자연인**이 확인될 경우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자 신원확인을 진행하고, 필요시 복수의 자연인 전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위반시)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잘못하여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20)

(금융기관 등) AML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3) 사례 3: <mark>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 미흡</mark>

- ◈ 가상자산사업자 C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마련 · 운영** 중이나,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Alert)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아니함
- □ (근거규정)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금법&4)
 - 또한, 사업자는 **고객의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세택회 업무규정, §76, §77)
- □ (유의사항)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변경 등을 통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합니다.
 - * (예시) 고객이 10분간 5억원을 인출하는 경우를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실상 10분간 5억원 이상의 거래 자체가 없어 의심거래 추출(Alert)이 0건임
 - →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하여 10분간 1억원 인출하는 고객으로 기준 조정
 -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업무는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 □ (위반시) 고객의 의심거래를 3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17, §20)

(금융기관 등) AML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4) 사례 4: <mark>의심거래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미흡</mark>

- ◆ 가상자산사업자 D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 丙을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으나, 이후 **丙의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검토・보고하지 아니함
- □ (근거규정) 금융회사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한 이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 니다. (「특금법 감독규정」§4)
- □ (유의사항)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한 자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매우 높은 자이므로 금융회사 등은 해당 고객의 거래행위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해당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고객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위반시)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객확인의무를 해태할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20)
 - *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의무가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금년 2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왔음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미흡한 점이 확인 되어, 금융정보분석원은 미흡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